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2020년도 제7차 회의록	
일 시	2020. 08. 25.(화) 14:00 ~ 15:00	장 소	미래관 1006호
참석의원	정광희 의원, 김재환 의원, 김진경 의원, 임지영 의원, 황태선 의원, 오일숙 의원, 왕성원 의원, 김지훈 의원, 배진건 의원, 장용석 의원		
불참의원	김영한 의원		
간 사	강창호 기획실장, 경희수 기획실 주임		

I. 안 건

-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II. 회의내용

- 김진경 의장(이하 의장)이 의원정수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고 강창호 기획실장(이하 기획실장)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함
- 기획실장이 배포된 유인물을 토대로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함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속기관) ① (생략) 1. ~ 16. (생략) 17. 교육혁신원(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② (생략)	제3조(부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 1. ~ 16. (현행과 같음) 17. 교육혁신원(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u>교육혁신성과관리실</u>) ② (현행과 같음)
<u>부칙(신설)</u>	<u>부칙(2020.0.0. 공포)</u>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2(학위과정의 연계)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은 상호 연계하여 운영(이하 “ <u>학사·석사연계과정</u> ”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의2(학위과정의 연계) ----- -----(<u>학·석사연계 및 학사연계 석·박사학위통합</u>)----- -----,
제38조(출석)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u><신 설></u> 5. <u><신 설></u>	제38조(출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본인 출산, 본인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u> 5.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현행	개정(안)
6. <신설> ③ (생략)	입원하는 등의 사유 6.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졸업 유예) 제56조의 졸업자격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 유 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제57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 -----.
부칙(신설)	부칙(2020.0.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신설>	제13조(전형절차) ① -----에 관한 사항 은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②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대학 입학전형공정관리 위원회를 두며, 입학전형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규정 또는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자 선정, 전형 및 평가절차 등의 공 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 ③ (생략) ④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하며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신설> 2. <신설> 3. <신설>	제19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 -----.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 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 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 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 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학칙으 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칙(신설)	부칙(2020.0.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왕성원 의원이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실장이 우선 기획실에서 대학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사업의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개편하고자 교육혁신성과

- 관리실을 신설함에 따라 제3조(부속기관)를 개정하고자 하였음
- 오일숙 의원이 교무처에서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칙 내 출석 관련 세칙을 개정(제38조(출석))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인 고등교육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57조의 2(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개정하고자 하였음을 설명함
 - 또한 약학대학의 학사연계 석·박사통합과정 학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9조의 2(학위과정의 연계)를 개정하고자 하였음을 설명함
 - 김재환 의원이 입학처에서 제13조(전형절차)와 제19조(입학허가 및 취소)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실장이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6월 2일자로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진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 황태선 의원이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교과목) ① (생략) ② (생략) ③ 학년·학기별로 정한 교과과정에 따라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u>다음 학년 또는 다음 학기에</u> 등록할 수 없다. ④ (생략)	제22조(교과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음 <u>학년에</u> 등록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학위수여자격) ① (생략) 1. (생략) 2. 이수 학점이 <u>160학점</u> 이상 3. ~ 4. (생략) 5. <신설> ② (생략) 1. (생략) 2. 이수 학점이 <u>의학 과정에서 160학점 이상, 의과학 연구과정에서 34학점 이상</u> 3. ~ 6. (생략) 7. <신설> ③ ~ ④ (생략)	제45조(학위수여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이수 학점이 <u>180학점</u> 이상 3. ~ 4. (현행과 같음) 5. <u>선택 과목 2학점 이상 이수</u>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이수 학점이 <u>의학 과정에서 180학점 이상, 의과학 연구과정에서 34학점 이상</u> 3. ~ 6. (현행과 같음) 7. <u>선택 과목 2학점 이상 이수</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조직) ① (생략) ② (생략) ③ 의전원에는 교무, 학생, 연구,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u>교무부, 학생부, 연구부,</u>	제50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부서를 두고,</u>

현 행	개 정 (안)
<u>의학교육학과 등을 두고, 해당 부서에 부원장 또는 과장을 보한다.</u> ④ ~ ⑦ (생략)	<u>해당 부서에 부원장을 보한다.</u> ④ ~ ⑦ (현행과 같음)
<u>부칙(신설)</u>	<u>부칙(2020.0.0. 공포)</u> <u>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제45조 제1항 2호 및 5호, 제2항 2호 및 7호는 2020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한다.</u>

- 정광희 의원이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황태선 의원이 1학기 전공과목에 과락이 있어 학년을 유급할 경우에도 2학기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160학점에서 180학점으로 졸업 이수학점을 조정하고 선택과목 중 2학점을 필수 이수하도록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함
- 김지훈 의원이 유급할 경우에도 2학기에 수강할 수 있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염려스럽다고 의견을 제시함
- 황태선 의원이 기존에 유급이 확정되는 경우 2학기 수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오히려 저하되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 기회를 열어주고자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과락이 있는 학생의 경우 지도 교수의 특별 지도를 통하여 학습 의욕 고취 및 수학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함
-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기획실장에게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10조(회의결과)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설명하다.
- 기획실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의 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III. 폐회선언

○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

확 인	의 원	서 명	의 원	서 명
	김진경	김진경	김재환	김재환
	정광희	정광희	황태선	황태선
	임지영	임지영	오일숙	오일숙
	왕성원	왕성원	김영한	
	김지훈	김지훈	배진건	배진건
	장용석	장용석		